

제115회 세무회계1급

(A형)

[illegible]

(B형)

[illegible]

(A형)

[illegible]

(B형)

[illegible]

세법1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 ·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문항당 4점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등기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답] ④ 법인세법 제6조, 제7조 및 집행기준 60-0-1,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②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상법」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기본통칙 19-19-1, 집행기준 26-43-3,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상법」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3. 다음은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강남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주)강남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제4기(2024.1.1. ~ 2024.12.31.)의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1) 제3기 초에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신고 하였다.
- (2) 제3기의 상각 부인액은 1,000,000원이다.
- (3) 제4기부터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었다.
- (4) 제4기에 2,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 ① 세무조정 없음
- ② 손금불산입 1,000,000원
- ③ 손금불산입 2,000,000원
- ④ 손금산입 1,000,000원

[답] ④ 손금산입 1,000,000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1) 회사상각액 : 2,000,000원
- (2) 상각범위액 : $20,000,000\text{원} \times 0.2(\text{변경된 상각률}) = 4,000,000\text{원}$
- (3) 전기 상각부인액 추인 :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당기 시인부족액 2,000,000원과 전기 손금 부인액 중 적은 금액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사용료 및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경비에 속한다. 다만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는 업무무관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무관경비에 포함된다.
- ④ 업무무관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도 업무무관경비에 포함된다.

[답] ①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상품의 판매가격의 미수액
- 나. 용역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 다.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마.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바.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

- ① 가, 다, 마
- ② 가, 나, 다
- ③ 나, 마, 바
- ④ 다, 라, 바

[답] ② 법인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판매가격의 미수액
- 나. 용역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 다.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6. (주)세무는 전기(제23기) 초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000,000원을 대여하고 당기 말(제24기, 2024.1.1 ~ 2024.12.31)까지 회수하지 않았고, 이자만 40,000원을 수취하였다. (주)세무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5%)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무의 가지급금인정이자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1년은 365일 이라고 가정한다.

- ①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50,000원(상여)
- ② <손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40,000원(상여)
- ③ <손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20,000원(상여)
- ④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10,000원(상여)

[답] ④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

- 계산 : $1,000,000 \text{원} \times 365 \times 5\% \times 1/365 - 40,000 = 10,000 \text{원}$ (익금산입, 상여)
- 판단 : $10,000/50,000 = 20\%$,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월공제 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6억원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7억원인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3억원만을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으로 기재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강제 이월하여 공제된다.

8. 다음의 세액공제 중 15년(2020.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투자세액공제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답] 모두 정답

※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한으로 15년을 고려하는 것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공제 기한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문제의 지문에서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을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인정함.

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 ②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 ③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④ 수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탁자의 지위 이전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③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자기 적립 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0,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자기생산 취득 재화의 면세 전용,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④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13.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블루베리 요거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조세식품(중소기업)의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1. 가공하지 않은 블루베리 매입내역

구분	금액	비고
국내매입	78,000,000원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았다.
해외수입	52,000,000원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2. 블루베리 사용내역

구분	국내매입 금액	해외수입 금액
요거트제조	70,000,000원	30,440,000원
거래처증정	-	19,552,000원
기말재고	8,000,000원	2,008,000원
합계	78,000,000원	52,000,000원

- ① 1,200,000원
- ② 3,000,000원
- ③ 4,200,000원
- ④ 5,000,000원

[답] ③ 4,2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1. 국내매입분 : 78,000,000원 $\times$ 4/104 = 3,000,000원

2. 해외수입분 : (50,000,000원 - 50,000,000원 $\times$ 19,552,000원/52,000,000원) $\times$ 4/104 = 1,200,000원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
-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④ 사업양도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5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0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주관식(단답형)

문항당 4점

※ 반드시 OMR 카드 앞면의 주관식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영리내국법인 (주)강서는 제24기(2024.1.1.~2024.12.31.) 중에 유가증권을 전량 현금 1,000,000원에 처분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 4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이 유가증권은 제23기에 (주)강서의 임원 甲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주)강서가 유가증권 처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300,000원(△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다면, 제23기 취득 당시의 유가증권의 시가는 얼마인가? 단, 처분 직전까지 유가증권은 실제 매입가액을 장부상 계상하였고, 제23기 및 제24기의 세무조정은 적절하다.

[답] 900,000원

• 법인세법 제15조

- (1) 장부상 취득원가 : 1,000,000원 - 장부상 취득원가 = 400,000원, ∴ 장부상 취득원가 = 600,000원
 (2) 취득 당시의 시가 : 시가 - 600,000원 = 300,000원(익금불산입, 유보), ∴ 취득 당시의 시가 = 900,000원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영등포의 제4기(2024.1.1.~2024.12.31.)의 기말재고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제4기 말의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의 합은 얼마인가?

구분	장부상 평가액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제품	5,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재공품	3,000,000원	2,500,000원	2,700,000원	3,000,000원

- (1)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품은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재공품에 대한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2) 2024년 10월 31일에 제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였다.

[답] 8,000,000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 (1) 제품에 대해서 10월 31일에 신고하였기에 임의변경에 해당하여, 선입선출법과 변경 전 당초 평가방법인 총평균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5,000,000원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2) 재공품은 무신고이기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함 : 3,000,000원

3. (주)양평(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 ~ 2024.12.31.)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 후 차기로 이월되는 이월결손금 잔액은 얼마인가? 단, 당기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70,000,000원(법인세비용 10,000,000원)

(2) 기중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시가 30,000,000원)를 무상으로 수증 받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공제되지 않은 세무상 기초 이월결손금 내역

 - 제5기 : 30,000,000원
 - 제18기 : 27,000,000원
 - 제19기 : 15,000,000원
 - 제22기 : 10,000,000원

[답] 2,000,000원

• 법인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70,000,000원 + 법인세비용 10,000,000원 - 자산수증이익 30,000,000원(자산수증이익은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5기 이월결손금에서 보전) = 50,000,000원
2. 이월결손금 잔액 : (27,000,000원 + 15,000,000원 + 10,000,000원)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0,000,000 = 2,000,000원

4. 보세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 이세무씨는 수입된 플라스틱 부품을 가지고 장난감을 제조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세무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고, 제시된 것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1) 장난감의 공급가액 : 60,000,000원

(2) 수입된 플라스틱부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 50,000,000원

(3) 관세 : 7,000,000원

[답] 3,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

- (1)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세표준 : 50,000,000원 + 7,000,000원 = 57,000,000원
 - (2) 사업자가 징수하는 과세표준 : 60,000,000원 - 57,000,000원 = 3,000,000원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다음은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화의 2024년 제2기 매입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개화의 2024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액을 구하시오.

- (1) 공급가액 5,000,0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착오로 공급가액 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공급가액(5,000,000원)이 동일 과세기간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 (2) 업무용중형승용차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3)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로서 2024년도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임)로부터 공급대가 2,00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 (4) 직원 사택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5) 제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6)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답] 1,5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38조

- (1) 500,000원
- (2) 렌트비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 (3) 종업원 식대 :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 (4) 300,000원
- (5) 700,000원
- (6) 상품구입 :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주관식(약술형)

※ 반드시 OMR 카드 뒷면의 약술형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제조의 제24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업연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에 제시한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전기까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0점]

1. 국고보조금 5,000,000원을 지급 받고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였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자산은 2025년에 취득할 예정이며, 아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제21기에 납부하였던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00,000원을 환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 500,000원을 환급받고, 재산세와 환급가산금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제22기에 납부하였던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6,000,000원을 환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 600,000원을 환급받고, 취득세와 환급가산금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300,000원,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200,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500,000원을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5. 제20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주)공장의 주식(지분율 5%)을 당기 초에 추가로 취득하여 (주)공장의 총 주식 중 6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8,000,000원을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답안양식]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1						
2						
3						
4						
5						

[답]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원)	소득처분
1(1점)	국고보조금	5,000,000	기타			
2(1점)				재산세환급가산금	500,000	기타
3(2점)				토지	6,000,000	유보
3(2점)				취득세환급가산금	600,000	기타
4(2점)	국민건강보험연체금	300,000	기타사외유출			
5(2점)	(주)공장 주식	8,000,000	유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손금불산입한다.
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회사가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2. 음식점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인 강북의 2024년도 과세기간(1.1.~ 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차가감납부세액을 구하고 계산내역을 약술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0점]

- (1) 과세공급대가 : 50,000,000원(이 중 60%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임)

(2)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3,500,000원(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 중형승용차 관련분 500,000원 포함)

(3) 면세농산물 구입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고, 농산물 가액은 800,000원이다.

(4)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다.

(5) 강북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예정 부과기간의 고지 납부세액은 없었다.

[답] 195,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1) 납부세액 : 50,000,000원×15%×10% = 750,000원
- (2)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3,500,000원 - 500,000원)×110/10×0.5% = 165,000원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50,000,000원×60%×1.3% = 390,000
- (4) 차가감납부세액 : 750,000원 - (165,000원 + 390,000원) = 195,000

세법2부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

객관식

문항당 4점

1.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②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제외)와 혼외 출생자의 생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③ 개인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④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아래 자료에 제시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합계로 옳은 것은?

-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로 역외거래가 아닌 경우
 - (2)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
 -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증여세인 경우
 -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속세인 경우

- ① 40년
- ② 42년
- ③ 45년
- ④ 50년

[답] ② 42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로 역외거래가 아닌 경우 : 7년
- (2)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 : 10년
-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증여세인 경우 : 10년
-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속세인 경우 : 15년

3.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후발적 사유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한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답]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②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언제라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면 된다.
- ④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답] ③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3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③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 ④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답] ④ 국세기본법 제35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

6.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답] ③ 30일(×) → 20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81조의8, 제81조의13 제1항 제2호

7. 다음 중 소득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④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①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 신탁의 위탁자가 아닌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 ③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 ④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8.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③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답] ②

- ① 국외(×) →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90%가 아닌 100%이다.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2과세기간이 아닌, 1과세기간 동안이다.

9.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소득내역
1)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 10,000,000원
2)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10,000,000원
3) 비영업대금의 이익 : 5,000,000원
4)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갑의 종합소득공제액 : 2,000,000원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0원 + 1,400만원의 초과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0원 + 5,000만원의 초과액의 24%

- ① 5,500,000원
- ② 6,565,000원
- ③ 6,990,000원
- ④ 6,900,000원

[답] ③ 6,990,000원

• 소득세법 제62조

- 1. 금융소득금액 : 25,000,000원 + 5,000,000원×10% = 25,500,000원
- 2.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 3. 과세표준 : 55,500,000원(금융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2,000,000원 = 53,500,000원
- 4. 산출세액 : (1)과 (2) 중 큰 금액 = 6,990,000원
(1) 20,000,000원×14% + (53,500,000원 - 20,000,000원)×기본세율
= 2,800,000원 + [840,000원 + (33,500,000원 - 14,000,000원)×15%] = 6,565,000원
(2) 5,000,000원×25% + 20,000,000원×14% + (30,000,000원 - 2,000,000원)×기본세율
= 1,250,000원 + 2,800,000원 + [840,000원 + (28,000,000원 - 14,000,000원)×15%] = 6,990,000원

10. 다음 중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법인의 대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자금을 인출 할 수 있다.
- ③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형태로 과세하지만, 법인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하므로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가 없다.

[답] ①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은 공과금 성격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 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대가
- ② 산업재산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③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답] ④ 소득세법 제37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는데,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 ②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추가공제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다.
- ③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200만원, 경로우대공제는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이 적용되며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된다.
- ④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답] ②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및 시행령 제106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다.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③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거주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촌 동생에게 매각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답] ②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당행위의 결과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 거래자에 대하여만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 갑(남성)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1. 급여액 : 30,000,000원(비과세 급여 2,000,000원 포함)
- 2. 의료비 지출액

대상	나이	금액	내역
본인(갑)	45세	1,500,000원	보청기 구입비(1,000,000원)와 미용성형수술비(500,000원)
배우자	41세	1,000,000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
장남	14세	3,000,000원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 갑의 배우자와 장남은 갑의 기본공제대상자이다.

- ① 99,000원
- ② 150,000원
- ③ 90,000원
- ④ 0원

[답] ①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59조의4

(1) 총급여 : 30,000,000원 - 2,000,000원(비과세 급여) = 28,000,000원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 ① + ② = (-)340,000원 + 1,000,000원 = 660,000원

① 일반 의료비 : 한도 7,000,000원

• 의료비 - 총급여×3% = 500,000원(콘택트렌즈 구입비 한도) - 840,000원 = (-)340,000원

② 본인 의료비 : 1,000,000원

(3) 의료비세액공제액 : 660,000원×15% = 99,000원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 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 ④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답] ③ 소득세법 제45조 및 제160조의2,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먼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다.

주관식(단답형)

문항당 4점

※ 반드시 OMR 카드 앞면의 주관식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국세기본법상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오.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보충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보충적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과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의 변경·소멸 등의 효력이 ()에게 그대로 미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충적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답] 제2차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

2. 다음의 국세기본법상 규정에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오.

-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재결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2) 재결청은 ()의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답] 국선대리인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3.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①)에 들어갈 단어를 작성하시오.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작위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항이면 그 처분의 내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1)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①) 처분
 - (2) 「감사원법」에 따라 (②)를 한 처분이나 그 (②)에 대한 처분
 - (3)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③) 부과 처분

[답] 통고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① 통고, ② 심사청구, ③ 과태료

4. 다음은 (주)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 (주)A와 특수관계 없음)의 2024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총급여액을 계산하시오.

- ※ 근로기간 : 2024.04.01. ~ 2024.12.31
- (1) 급여 : 100,000,000원
 - (2) 식대 : 4,500,000원(월 500,000원씩 수령, 식사를 따로 제공받음)
 - (3)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3,000,000원
 -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4,000,000원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 : 2023년, 결산확정일 : 2024.02.27)
 - (5) 주주총회에서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6,000,000원
(2023년도 근로에 대한 상여금임, 잉여금처분결의일 : 2024.03.01, 지급일 : 2024.04.25)
 -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 9,500,000원(2024년 이 금액 이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없음)
 - (7) 공휴일 연장근로 근무수당(1,500,000원), 실비변상적 성질의 숙직료(2,000,000원), 자녀(6세)의 보육으로 받은 급여(1,800,000원 = 월 20만원×9개월)가 있다.

[답] 114,500,0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총급여액 : 100,000,000원(급여) + 4,500,000원(식대) + 6,000,000원(잉여금처분 상여) + 2,500,000원(직무발명 보상금) + 1,500,000원(연장근로수당) = 114,500,000원
- (2)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전액 과세한다.
- (3)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취득 자금 대여는 비과세한다.

- (4)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2023년도의 근로소득이다.
- (5)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2024년의 근로소득이다.
- (6)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0,000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한다.
- (7) 실비변상적 성질의 숙직료 및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5. 다음은 근로자인 거주자 을(40세 여성)의 2024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다. 을의 2024년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1) 을의 총급여액 : 40,000,000원
- (2) 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나이 : 11세, 9세, 0세(2024년 출생함)
- (3) 을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 연금저축계좌 8,000,000원, 퇴직연금계좌 4,000,000원

[답] 2,400,000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 (1) 자녀세액공제 : 350,000원(8세 이상 자녀 2명) + 700,000원(셋째 출생) = 1,050,000원
- (2)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text{Min}[\text{ㄱ}, \text{ㄴ}] \times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1,350,000원
 - ㄱ. 연금계좌납입액 : 8,000,000원 + 4,000,000원 = 12,000,000원
 - ㄴ. 한도액 : 6,000,000원 + $\text{Min}(4,000,000\text{원}, 3,000,000\text{원})$ = 9,000,000원
- (3) 세액공제액의 합계액 : (1) + (2) = 2,400,000원

주관식(약술형)

※ 반드시 OMR 카드 뒷면의 약술형 답안란에 답안을 작성하시오(연필 또는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금지).

1. 다음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① 및 ②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10점]

• 납부지연가산세 = ① + ② + ③

-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0.022%
- ② 초과환급 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0.022%
-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

[답] 10점(각 2점, 5개 이상 작성 시 10점)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항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4. 위 '3'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 6.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2. 다음 각 근로소득 항목에 대하여 그 수입시기를 작성하시오. [10점]

- ① 급여
-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③ 인정상여
- ④ 임원의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

[답] 각 2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49조

- ①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③ 인정상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④ 임원의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초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OMR 카드의 수험번호, 종목, 급수, 유형 및 감독관확인란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